

3. 改正條例(案)

대구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대구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사무보조자)

①감사 또는 조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.

②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기타 의회사무처 소속직원으로 한다. 다만,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4. 新·舊條文對比表

현 행	개 정 (안)
제4조(사무보조자) <u>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께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.</u>	제4조(사무보조자) ①감사 또는 조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. ②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기타 의회사무처 소속직원으로 한다. 다만,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.

13. 大邱直轄市議會에서의證言·鑑定등에관한條例案

발의년월일 : 1992년 12월 일

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

1. 提案理由

지방의회에서의 보고·서류제출의 요구, 증인·감정등에 관한 질차 및 불칙조항을 규정, 의사운영에서의 정확하고 진실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을 마련함으로써 내실있는 안전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.

2. 主要骨子

○ 증인의 출석의무 등

— 증인출석의무,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, 서류의 제출거부 금지

○ 의회의 출석요구권